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28 제출연월일: 2024. 12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중 "휴업"을 "15일 이상 휴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수상레저사업자"를 "제1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한 수상레저사업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휴업 등의 신고) ① 수상	제41조(휴업 등의 신고) ①
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	
중에 <u>휴업</u> 하거나 폐업하려는 경	<u>15일 이상 휴업</u>
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	
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	
고하여야 한다.	
② <u>수상레저사업자</u> 가 휴업한 수	② 제1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한
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	<u>수상레저사업자</u>
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	
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	
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	
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양	
경찰서장 또는 시장・군수・구	
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	
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	
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